
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9.

발 의 자 : 강준현 · 이소영 · 김현정
홍기원 · 조승래 · 박범계
이정문 · 송재봉 · 임호선
김종민 · 복기왕 · 이주희
이학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, 단층제 행정구조(광역+기초)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·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·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,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.

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% 가산에서 50%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

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
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)
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2항 중 “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”를 “2029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”로, “25”를 “5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”를 “2029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”로, “25”를 “5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재정 특례) ① (생 략)	제14조(재정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지방교부세법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<u>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</u>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<u>25</u>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9년까지</u> <u>세종특별자치시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</u> ----- ----- -----.
③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<u>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</u>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2029년까지</u> <u>세종특별자치시에</u> ----- ----- -----

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<u>25</u>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. ④ · ⑤ (생략)	----- ----- -----<u>50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